Version 3.0

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 기본규정

Version #: 3.0

Issue Date: 2023/03/27

제ㆍ개정 이력서

2020년 10월 29일	제 정	Version 1.0
2022년 02월 16일	1차 개정	Version 2.0
2023년 03월 27일	2차 개정	Version 3.0
2020 2 00 2 1 2	2 1 1 11 0	TOTAL O.C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 기본규정

Version #: 3.0

Issue Date: 2023/03/27

목 차

제1장	종칙	4
제1조(목적)4	:
제2조	(적용 범위)4	:
제3조	(권한)4	:
제2장	구성	4
제4조	(구성)4	:
제5조	(위원장)5)
제3장	회의	5
제6조	(소집권자)5)
제7조	(소집절차)6	j
제8조	(결의방법)6	j
제9조	(부의사항)	,
제10조	(보고사항)	,
제11조	. (관계인의 의견청취)7	,
제12조	. (이사회와의 관계)	,
제13조	. (의사록)8	í
제4장	기타	8
제14조	. (사무국)8	,
제15조	. (규정의 개폐)8	í
부칙		9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 기본규정

Version #: 3.0

Issue Date: 2023/03/27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 적)

이 규정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공정성 및 적정성 등의 확보를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이사회 내에 설치함 에 있어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이 규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한다.
- ②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면서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 기본규정

Version #: 3.0

Issue Date: 2023/03/27

-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하고, 그와 같은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 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의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 기본규정

Version #: 3.0

Issue Date: 2023/03/27

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원장과 위원만 가진다. 단, 위원회 위원이 아닌 각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,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의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 기본규정

Version #: 3.0

Issue Date: 2023/03/27

제9조 (검토사항)

- ①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회 승인 대 상으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검토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 1항에 정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, 계약 방식,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,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 사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 (보고사항)

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.

- 1.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의 집행 경과와 실적
- 2. 기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관한 사항으로서, 회사가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

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 기본규정

Version #: 3.0

Issue Date: 2023/03/27

제12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되 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.

제13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에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기타

제14조 (사무국)

- ① 이사회 담당 사무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- ② 사무국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
제15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 기본규정

Version #: 3.0

Issue Date: 2023/03/27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1차 개정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